

제24차 아주대학교대학평의위원회 회의록

1. 일 시 : 2010. 7. 16(금), 16:00 ~ 20:00

2. 장 소 : 율곡관 제1회의실(율곡관 204호)

3. 참 석 : 총 13명 중 9명 참석

- 참석 평의원 : 박영무 의장, 주동표 부의장, 조중열, 이재호, 오동석, 임재수, 김용호, 임원형, 이해진, 평의원(이상 9명)
- 불참 평의원 : 박철균, 김관균, 박상호, 박윤규 평의원(이상 4명)

4. 회의안건

가. 의안

- 안건1. 학칙 개정(안) 심의
- 안건2. 펀드 관련 감독 관청 감사 의뢰 기관 결정
- 안건3. 대학 본부의 약학대학 설립 관련 재정 보고 및 관련 예산 계획 논의
- 안건4. 대학 본부의 종합관, 병원 웰빙센터, 임상수기센터 건설사 계약 과정을 포함 건축 진행 보고 및 관련 예산 청취 논의


5. 개회선언

의장 박영무 : 성원보고 해주십시오.

간사 김근태 : 재적평의원 13분 중에서 현재 7분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이해진 의원께서는 조금 있다가 도착하신다고 합니다.

의장 박영무 : 성원 보고에 따라서 제24차 아주대학교대학평의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우선 제안된 것 중에 학칙 개정안이 있습니다. 김근태 간사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간사 김근태 : 회의자료 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오늘 학칙 개정사항은 총 4건입니다. 대학원 경영학 계열 경영정보학과 석사학위과정 명칭변경과 박사과정 및 석박사 통합과정 신설, 학연산협동과정으로 (주)휴니드테크놀러지스 석사과정,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신설, 그리고 시간제 등록생의 선발인원 기준 및 시간제등록생 별도 반 수업일수 4주 이상으로 따로 정한다는 수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 간서명  장

신규대비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제8조 대학원, 일반대학원에 석사과정,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을 두며 설치학과는 별표2와 같다 에서 별표2인 6페이지를 보시면, 일반대학원 경영학 계열에 경영정보학의 경영학 석사를 경영정보학 석사로 학위명칭을 변경하고, 아울러서 경영정보학 박사 학위과정과 경영정보 석박사 통합과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아래 부분에 학연산협동과정으로 주식회사 (주)휴니드테크놀로지스와 석사과정, 박사과정 및 석박사 통합과정 신설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휴니드테크놀로지는 일반대학원에 소속되어있는 NCW학과와 (주)휴니드테크놀로지가 학연산과정을 개설한다는 협정에 의해서 신설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관련서류는 대학원을 통해서 올라온 15페이지 '아주대학교와 (주)휴니드테크놀로지스와의 학연산협동과정 개설 및 상호 협력에 관한 협약서' 가 있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이를 근거로 대학원위원회 회의록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22페이지에 경영정보학과 학위명칭변경과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신설계획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의장 박영무 : 22페이지에 2010학년도 대학원 신설계획서라고 되어 있는 것은 경영대학원 관련 서류지요?

간사 김근태 : 네, 석박사통합과정, 박사과정 신설 계획안입니다.

의장 박영무 : 이 서류가 좀 이상합니다. 누가 제출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간사 김근태 : 경영대학에서 대학원으로 보낼 때는 공문으로 해서 냅니다. 대학원으로 공문을 보내면 대학원에서는 관련 서류가 첨부된 공문을 근거로 대학원위원회를 열어 심의하고 회의록을 작성하게 됩니다.


의장 박영무 : 경영대학에서 온 회의록인지. 기초단위의 회의 결과가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회의록이 빠진 것 같은데요? 대학원회의록만 있지 경영대학의 회의록이 없어요. 과정의 오류는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만. 해당 대학에서 다 논의를 거쳐서 온 것은 맞나요?

간사 김근태 : 네, 올라올 때는 다 경유해서 올라옵니다.

의장 박영무 : 교무회의도 거쳐서 올라옵니까? 회의록이 있습니까?

간사 김근태 : 네, 교무회의 결과 7쪽, 8쪽에 있습니다.

의장 박영무 : 지난 번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전문적인 내용들은 각 과정에서 체크되었다고 봅니다. 평의회에서는 절차 과정을 중시하므로 관련 서류는 반드시 첨부하셔야 됩니다.

< 간서명 란 > 

간사 김근태 : 단계를 거칠때에 관련 자료들이 다 붙어있습니다.

의장 박영무 : 자료를 보다보면 중간 단계를 뛰어 넘어서 진행되는 일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 것은 체크되어야 됩니다.

평의원 주동표 : 신규대비표 보시면 경영정보학과 관련해서 현행 경영학사 석사, 그 다음에 학위과정 경영정보학 박사, 석박사 통합과정 주욱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기로 한 결정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경영정보학 석사까지는 있는데, 대학원 결정사항에는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에는 전혀 언급이 없는 것 같은데요?

간사 김근태 : 9페이지 교무회의록의 9페이지에 제4호, 제8조(대학원)이라고 해서 내용이 들어 있고요.

평의원 주동표 : 거기에는 있는데, 그 논의에 그 전 근거사항으로 쓰이는 대학원 결정사항 있겠습니까?

간사 김근태 : 대학원위원회 회의록 13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평의원 주동표 : 13페이지 보시면 좌측하단에 보시면 학과를 신설하기로 하고 학위 명칭에 대해서는 기존 경영정보학과 석사과정 학위명을 경영정보학석사로 개정하기로 그렇게만 있는데 대비표에는 박사과정 명칭에 대해서도 있습니다.

간사 김근태 : 신설을 하게 되면 학위명칭도 함께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22페이지 대학원 신설계획서에 보면 그게 붙어서 올라와 있습니다.

평의원 주동표 : 대학원 위원회 회의록에 그 내용도 같이 들어가 있었으면 좋았을걸...

간사 김근태 : 지금 대학원에서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관련서류를 가지고 왔습니다.

의장 박영무 : 문제가 있긴 있네요. 석사이름 바꾼 것만 있고 박사과정은 왜 빼났어요?

평의원 이재호 : 신설이니까요. 이름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신설에 대해서는 어차피 경영정보학 통합과정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박사 이게 들어가는 거지요.


의장 박영무 : 예, 신설이니까요.

평의원 이재호 : 혹시 우리 학연산 협동과정에 전체 학생이 얼마나 있는지 아세요?

간사 김근태 : 40명 가량...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의원 조중열 : 1학년 2학년 있으면, 한 20명 정도 그 정도 되면 잘되는 편이고, 안되면 5명 정도 돼요.

평의원 이재호 : 10명 안되면 강의를 여기서 하고 10명 넘으면 가서 하게 되는 건

< 간서명 란  >

가요?

간사 김근태 : 그렇지 않아요, 학교에 와서 하는 수업이 절대적으로 많고 출장강의는 정해서 하게 됩니다.

평의원 조중열 : 학연산 과정은 교수시수에는 안 들어가죠?

간사 김근태 : 네, 안 들어가고 강사료를 드리게 됩니다.

평의원 임재수 : 등록금은 어떻게 되나요?

간사 김근태 : 똑같습니다, 대신 협약에 의해서 대부분 약 20% 정도 학비감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회사에서 지원된다고 합니다.

평의원 이재호 : 그 만큼은 우리가 적게 받는 거고 나머지는 주로 회사에서 지원되는 건가요?

평의원 조중열 : 옛날에 비하면 많이 활성화되었죠.

평의원 이재호 : 옛날에 형식적이었던?

간사 김근태 : 그게 아니라 규모가. 사실 전자 쪽이 제일 활발하죠.

평의원 이재호 : 실제로 이런 거를 통해서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한다든지 하면서 더 확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간사 김근태 : 그렇습니다.

평의원 조중열 : 서로 도움이 되는 거죠.

평의원 이재호 : 그런데 대학원 입학정원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간사 김근태 : 학연산 협동과정은 정규 학위과정이기 때문에 정원 내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평의원 조중열 : 일반대학원이 남기 때문에 가능한 거?

간사 김근태 : 네, 심지어 특수대학원이 활발하기 때문에 일반대학원에서 특수대학원으로 정원을 이동시키는, 언젠가는 일반대학원이 더 활성화되면 받아야죠. 그거는 학기 단위로 가능하기 때문에 통합관리하고 서로 이동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이쪽에 있어서 학위수여에 있어서 심사나 이런 것은? 간략화 한다든지?

간사 김근태 : 똑같습니다. 프로세스나 내용은 똑같고, 일부 교육과정도 거의 대동소이한데 일부 거기서 요구하는 것은 신규 개설하는 것이 있죠.

평의원 이재호 : 그것을 다 감안하면 시수로 인정 안 되는 게 조금 억울할 수 있겠네요.

< 간서명 란  >

평의원 조중열 : 강의료가 시간당 꽤 하죠?

간사 김근태 :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알겠습니다.

간사 김근태 : 의장님 시간제 등록생에 대하여 설명을 드릴까요?

의장 박영무 : 네, 그래요.

간사 김근태 : 시간제 등록생에 대해서 현행은 1항을 보면 고등교육법 제33조 1항의 입학자격이 있는 자에게 시간제로 등록하여 당해 대학의 수업을 받게 할 수 있으며, 당해 연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0분의 10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과 5항의 내용대로 총 입학정원의 100분의 10 이내로 수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평의원 조중열 : 실질적으로 늘어난 건가요?

간사 김근태 :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3항에 보면 시간제등록생의 학년도, 학기, 수업일수, 학점 당 이수시간, 수업방법은 본 대학교 학생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만이라는 게 추가됐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 6항에 근거해서 그대로 명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이 내용이 추가가 되지 않았었는데 법시행령을 충실하게 그 내용 그대로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이 시간제 등록생들만 모아서 수업을 할 수 있습니다.

평의원 오동석 : 그럼 4주 이상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간사 김근태 : 지금 시간제등록생의 수업은 학점당 15시간 이상, 본 학교의 학생과 동일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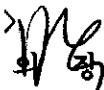
평의원 오동석 : 대비해서 만들었는데, 4주 이상으로 시행하도록 하면 구체적으로 16주는 아니지만 예를 들면 8주면 8주라고 별도의 규칙으로 제정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간사 김근태 : 4주를 하든 5주를 하든 학교 형편에 맞게 하는데, 학교기준인 1학점당 15주 이상에 해당하는 수업시간은 다 충족을 하고 시험이라든지 모든 학사관리는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평의원 오동석 : 수업일수라는 게 뭔가요?

간사 김근태 : 수업일수를 4주 이상 하면서 학점당 15시간 이상 하는 것을 유지해야 합니다. 별도 반으로 했을 때 최소 4주 이상해야 되고요.

평의원 이재호 : 4주라는 거는 4주 곱하기 주당 5일, 즉 20일이라는 뜻입니까?

< 간서명 란 > 

간사 김근태 : 맞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몇 시간씩 해야 하는 지를 과목마다 정합니다. 우리 계절학기 운영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의원 오동석 :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했으니 정하는 게 있어야 하는 거 같기는 하거든요. 대비해서 뒤에 보면 규칙이 있는데 규칙에서 얼마로 정한다 라는 게 있어야죠. 4주니까 4주로 정한다고 하면 되지 할 수 있다고 할 필요가 있나요?

간사 김근태 : 이게 시간제등록생에 관한 학사관리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언급이 되어 있지 않을까? 4주 이상으로 한 것은 대학에서 유연하게 학사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한 것 같습니다.

평의원 오동석 : 시행령에 따르면 학칙으로 정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오해를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규칙에 얼마라고 못을 박아야, 최소 4주인데 5주든 6주든 학교에서 정하라는 건데 그걸 그대로 따오다 보니까 정하지 않고 한 것이 아닌가?

간사 김근태 : 4주이상이라는 게 과목마다 시기마다 다양하게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한 학점 당 시간 이라는 게 기존에 학칙으로 다 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유지만 하면, 딱 정형화시켜놓기보다는...

평의원 이재호 : 우리 학교에 시간제등록생이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나요?

간사 김근태 : 네, 하고 있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평생교육원과는 다른 건가요?

간사 김근태 : 평생교육원은 학점은행제로 학점을 취득하고, 학교는 시간제등록으로 학점을 취득하는데, 일반적으로 학점은행제로 표현됩니다.


평의원 이재호 : 시간제등록생은 다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되나요?

간사 김근태 : 취득한 학점을 모아서 법률로 정한 학사학위 요건을 충족하면 평생교육진흥원에 제출하여 교과부장관에 의한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그러면 학위를 아주대학교 학위를 주는 게 아니라?

간사 김근태 : 지금 현재 아주대학교는 시간제등록생에 대해서 아주대학교 명의로 학위를 주지 않습니다. 주는 대학이 있습니다. 총 이수학점의 2/3이상을 그 대학에서 취득을 하면 그 대학의 학위증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우리가 하는 거는 학점을 이수하고 그 이수된 학점을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기관에서 학위를 받는 거군요.

< 간서명 란 > 

간사 김근태 : 평생교육차원에서 굉장히 건전하고 앞으로 발전가능성 있는 분야라고 보는데 지금 현재 우리 대학이나 주변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편법으로 하는 걸로, 그런 현상도 있고, 어느 대학에서는 그것을 활용을 하죠. 입학정원외이고 등록금 수입 등이 있기 때문에 어느 대학에서는 학위를 주는 거예요.

평의원 조중열 : 이거 전문으로 강의 이런 걸 만들어 하는 거 같더라고요. 편입 보면 유달리 많이 오는 학교가 있어요.

평의원 임재수 : 동국대학교 전산원도 별도의 건물을 만들어가지고 2년제 수료증을 주고, 등록금은 대학과 비슷한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근태 : 지방대학은 학생들이 안 가니까 그렇지, 하고 싶은 데가 많죠, 우리 대학교 같은 경우는 수요는 많이 있지만 현재 있는 학생들한테 수업여건이나 교육환경에 영향을 주거든요.

평의원 이재호 : 이 학생들의 등록금은 학점당에 비례 할 텐데 일반 학생들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간사 김근태 : 동일합니다.

평의원 조중열 : 평생교육원 쪽에서 벌어들이는 수업이 상당하거든요.

간사 김근태 : 우리나라도 교육의 새로운 시장이 거기라고 하죠. 그래서 평생학습중심대학추진본부가 특별기구에서 정부지원으로 설립이 되고 있는 겁니다.

평의원 임재수 : 강남대학교도 그런 케이스로 시작했다가 지금 이렇게 크게 성공한 케이스예요.

평의원 조중열 : 외국에서는 강의를 담당하는 게 정규 교수가 아니고 일반 강사들이 하게 하고, 실제로 교수들에게 부담이 많지는 않아요. 그 대신에 학교는 장소를 빌려주고 강사는 외부에서 데려와 가지고 자릿세 받는 거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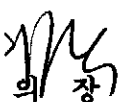
평의원 임재수 : 동국대학교 전산원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도 높고, 취업도 잘 된다고 합니다.

평의원 조중열 : 이것 잘 활용하면 학교살림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의장 박영무 : 지금 제가 보고 싶었던 거는 경영대학원 교수회의에서 이것을 논의했다는 것에 대한 서류가 없어서 요청했는데 지금 첨부된 서류하고 똑같은 거에 학장 커버레터만 더 붙어서 왔네요.

간사 김근태 : 대학원 경영학 계열에는 경영학과와 경영정보학과가 있는데 ...

의장 박영무 : 경영대학의 대학원 학과는 경영학과가 있고 경영정보학과가 있고 이

< 간서명 란  의 장 >

비즈니스 세 개가 있는데...

간사 김근태 : 대학원에 이비즈니스학과는 없습니다.

의장 박영무 : 경영학과장의 협조사인이 있으니까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보고 그것으로 같음하고, 그러면 대학원 관련 8조, 시간제등록생 6조, 학칙 관련해서 2가지인가요?

간사 김근태 : 네, 학칙과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의장 박영무 : 그런데, 6차 교무회의에서 결의한 내용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관련이 없나요?

간사 김근태 : 네. 학칙만 관련 있습니다.

의장 박영무 : 이전 다른 규칙이다?

간사 김근태 : 네.

의장 박영무 : 제8조하고 56조 김근태 간사가 설명을 드렸고 53조에 대해서는 간단한 확인을 거쳤습니다. 다른 의견들 있으시면 얘기를 해주시고, 특별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해진 평의원 입장)

의장 박영무 : 비가 오는데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럼 두 번째 안건으로 펀드 관련 감사 의회 기관을 결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난 회의에서 김용호 평의원, 이해진 평의원 그리고 다른 평의원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하는 걸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 경과를 말씀해주시지요.

평의원 이해진 : 이것 좀 먼저 나눠주시지요. (자료 배부) 그날 회의 이후에 총무처장님과 기획처장을 김관균 평의원과 같이 만났었구요, 총장직무대행을 연이어서 기획처장님하고 같이 만났었습니다. 그래서 총장직무대행께도 말씀드렸고 총무처장과 기획처장께도 말씀드려서 기존 평의원회에서 제안했던 내용을 가져가서 그 내용에 대해서 협의를 드렸어요. 지금 나눠드린 내용이 협의결과인데, 이거는 학교측에서 평의원회 쪽으로 제안한 내용인데, (자료 낭독) 대학평의원회에서 펀드관련 감사는 아주대학교 발전을 위한 감사이어야 하며, 이를 통해 펀드투자 관련하여 잘못된 점을 직시하고 재발방지하고 제도적 개선(안) 제시를 목적으로 해야 함을 제안한 바 있으며, 또한 평의원회 감사(안)을 원칙으로 내부적으로 감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평의원 각각이 노력하기로 한 바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이에 학교측과 대학평의원회 참여 위주의 감사가 아닌 학교, 교수회, 동문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보다 객관적인

< 간서명 란 >




절충안을 만들어보려고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제안감사(안)이 감사의 엄정성, 실효성,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평의회에 이 내용을 학교측에서 제안한 내용입니다. 감사는 지난 번에는 저희가 일반 감사의 일환으로 추진했었는데 사실 일반감사가 아닌 관계로 학교의 자체감사로 제3자적인 입장에 있는 동문대표와 함께 진행하는 것으로 했고, 목적은 처벌과 분란의 목적이 아닌 대학발전을 위한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지향적 감사를 목적으로 펀드 투자 관련 내용 및 절차를 조사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재발방지와 제도 개선이 목적이므로 이에 부합되게 감사결과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내용으로 진행했으면 하고, 그 결과에 따른 조치도 또한 내부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전제로 했습니다. 감사 내용은 2007년도, 2008년도 펀드 투자 결정과정과 경위입니다. 감사의 범위는 학내로 제한했고 5번에 보면 감사관의 구성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 안대로 6명으로 하되, 학교 추천 2명, 교수회 추천 2명, 동문 추천 2명, 각 대표에는 회계전문가 1명씩 포함하여 추천하고, 감사반장은 감사원 중에서 호선으로 하고 감사반 구성은 합의해서 6명을 어떤 식으로 구성할지 협의해서 구성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감사 기간은 감사위원들께서 판단하셔서 방학중에 하되 1주일이상 1개월 이내로 하고 감사반에서 협의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감사결과는 7일 이내에 총장직무대행과 평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대로 했습니다.

제가 학교 관련 보직교수님들 그리고 총장직무대행을 만나본 결과 이 분들도 학교에 이런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오픈해서 제대로 원인규명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시고 다만 전제조건에 깔아놨듯이 외부로 끌어들여서 이 내용을 해결하는 것은 서로 원하지 않는 바인 것 같습니다. 그날 저와 김관균 평의원이 총장직무대행을 만나서 협의했던 결과입니다.

의장 박영무 : 이 내용에 대해서 의견들 말씀해주시지요.

평의원 이재호 : 상당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확인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여기 처벌의 목적이 아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 감사의 결과 처벌할 일이 있다면 처벌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굳이 목적에 있어서 처벌의 목적이 아닌 이렇게 써야 할 필요가 있는가 의문이 듭니다.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감사의 결과가 뭐냐에 따라서 사후조치가 달라지는 것이지 처음부터 처벌이 없다는 의미로 단정 지을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역시 같이 연동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결과에 따른 조치 또한 내부적으로 처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 간서명 란  >

만약 감사의 결과 예를 들어서 형사상의 문제라든지 혹은 위법한 위법의 정도가 심각한 정도가 발견된다면 이것 역시 또한 내부적으로 처리한다는 전제 자체가 사실은 어폐가 있다고 봅니다.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제한점을 둘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사항인데 이 회계감사 관련해서 결국은 지금 각 대표 회계전문가 한명씩 추천한다면 3명의 회계전문가가 회계감사를 진행한다는 뜻입니까?

평의원 이해진 : 네.

평의원 이재호 : 그리고 감사의 범위를 학교에 한함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부분에는 뭐가 있나하면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재단의 감사가 2008년 결산 보고 때 말씀하신 액수를 보면 사실은 그 분은 233억이 펀드투자가 아니라 293억 펀드투자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그 시점에 이미 알고 계셨던 것을 회의록에서 볼 수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재단이 학교에 일종의 분식회계를 묵인 혹은 방조했다고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 우리가 그런 근거를 갖고 얘기할 수 있는데 감사과정에서 그런 내용들이 나온다고 할 때 그럼 그 부분은 조사를 안 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평의원 이해진 : 네.

평의원 이재호 : 그 이유는 뭔가요?


평의원 이해진 : 학교 내부감사가 우리가 진행했을 때 틀린 점과 틀리지 않은 점이 나오겠지요. 그 다음에 재단에서 그 내용에 대한 해명을 하던지 그럴 내용이지 재단을 뒤질 생각은 없는데요.

평의원 이재호 : 그건 이해진 의원생각이 그러신 것 같은데요.

평의원 이해진 : 제 의견 말씀드린 겁니다.

평의원 이재호 : 이전에 평의원회 회의록이나 이런 것을 보면 외감보고서 같은 것을 요청 드렸을 때 그것은 재단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여줄 수 없다고 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다행히 볼 수 있었는데요, 실제로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재단의 자료를 봐야 한다든지 하는 일이 있거든요.

평의원 이해진 :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평의원회가 학내 총장 자문 또 심의 기구로 있는데 재단에 대해서 언급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거야말로 이재호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외부에 하자가 있었다 형사처벌 해야 되겠다 라는 외부의 감사가 있는 경우에 진행되는 거지 평의원회에서 재단의 내용까지 감사를 하겠다라

< 간서명 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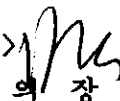
고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거든요.

평의원 이재호 : 그럴 수도 있겠죠.

평의원 이해진 : 의장님 저는 이 내용을 하면서 단계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내용부터 정리하는 게 맞지, 처음부터 크게 잡아서 여기까지 해야 되겠다, 사실 그러면 처음에 교수님들 안 내셨듯이 감사원 감사나 총리실 감사나, 저는 교육부 감사도 그 내용 못 뒤질 거라고 생각해요. 어차피 교육부에서도 자기들 자체적인 부분도 있을 거고, 결과적으로 외부 감사를 맡기는 거 밖에 없을 텐데, 전 그게 평의원회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 계신 학내 구성원 분들이 이진 진 짜 비리가 있다, 검찰 고발하겠다고 해서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저희가 지금 총장의 자문 기구입니다. 심의기구이구요. 학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까지 먼저 진행을 하시고 그 결과가 나오면 상대방, 반대편에서 있는 분들한테 저 분들은 저렇 거다 라고 미리 단정 지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3의 후원기관인 동문들까지 이 내용을 같이 봤을 경우에 이런 이런 내용이 문제가 있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단에 문제가 있다면 재단에 어떠한 조치를 해주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재호 평의원께서 말씀하신 처벌과 분란의 목적이 아니라고 제가 명시를 하자고 했어요, 거꾸로 제가 했어요. 그랬던 이유는 우리 내부 구성원들이 오픈된 내용으로 자료를 서로 보여주고 할 텐데 감추는 부분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실상을 정확히 알고 앞으로 그렇게 진행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건데, 누구나 다 아마 제가 관련됐다고 해도 그럴 겁니다. 관련 되서 자체적인 특별감사를 진행한다, 감출 것은 감추겠죠. 오히려 그 과정에서 더 분란이 일어날 것 같아서 저는 처벌과 분란이 목적이 아니라는 내용을 넣었거든요. 물론 이재호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문제가 심각한 정도다 라고 하면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 또한 내부적으로 처리함을 전제로 한다는 것을 학교측에서 명기를 했어요. 그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의지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평의원 이재호 : 내부적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심지어 형사적인 문제가 있다고 해도 내부적으로 처리하겠다는 건가요?

평의원 이해진 : 그건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형사적인 일이라는 게 어떤 부분인지? 뇌물에 대한 수수 이런 부분이 들어간다면 학교 측에서 좌시하지 않겠죠. 그걸 꼭 외부로 검찰에 고발 한다던가 그런 추가적인 조치까지는 제가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 간서명 란 > 
의 장

평의원 이재호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외부에 공개하기 위해서는 위원회 자체 합의 혹은 평의원회 합의든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만 공개한다 정도로 처리하는 게 어떨까요?

평의원 이해진 : 어떤 거요?

평의원 이재호 : 내부적으로 처리할 부분이에요.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누가 독단적으로 처리한다든지 이런 가능성을 배제하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평의원 이해진 : 의장님, 저는 이 안을 말씀을 드렸고, 총장직무대행을 포함한 학교 보직자 분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협의해서 별도로 제대로 조사한번 해보자, 실상을 알고자 한다 라는 부분을 저는 자꾸만 양쪽 안을 접근시켜서 거기에 통일된 안을 끌어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나누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평의원 이재호 : 제가 지금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런 부분에서 실효성 있는 감사, 그 결과에 따른 행동 조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가, 그런 결과나 조치에 있어서 미리 예단한 부분이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평의원 조중열 : 제가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 내부적으로 처리한다는 그거를 일종의 특별조사위원회라고 생각한다면 그 결과에 따라서 나중에 그 위원회에서 뭔가를 요청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아주 법규를 위반한 심각한 사안이 발견되었다고 하면 그 사람의 징계를 총장이 요청하는 거죠, 보통 조사위원회가 사법권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징계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 조치는 내부적인 조치에 다 들어가는 거죠. 형사고발은 안하더라도 이런 심각한 잘못이 있으니까 징계를 주세요 하고 총장님께 요청을 할 수 있는 거죠, 학교 안에서 징계를 요청 하는 것은 여기서 가능한 거죠?

평의원 이해진 : 글썽요. 감사의 목적 앞에 부분은 제가 얘기했는데 뒤에 부분은 학교 측에서 이렇게 주셨어요. 기획팀장님,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 또한 내부적으로 처리함을 전제로 함 이렇게 된 게 해석하기에 따라서 여러 갈래로 해석이 가능한 거거든요?

평의원 조중열 : 징계는 가능한 겁니다.

평의원 이해진 : 원칙이니까 이재호 교수님 말씀대로 심각하면 형사고발할 수도 있고 우리끼리 합의를 이룬다면 내부적인 조치를 취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내용을 함축적으로 써놓은 거 같거든요. 다만 문안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그걸 전제로 하겠다

< 간서명 란 >
의장

하는 부분은 내부적으로 끝내고 진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저는 형사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조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뜻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임원형 평의원 입장)

평의원 조중열 : 교수의 징계를 보면 보통은 소속 단과대 학장이 징계를 요청하거든요. 총장이 읽어보고 이게 말도 안 된다고 하면 기각이 되는 거고, 총장이 이거는 조사를 해 봐야겠다고 하면 그 다음에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총장은 언제든지 징계를 하든지 말든지 그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조사를 해보고 징계를 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하면 추천을 하고 그 다음에는 총장님 보고 판단을 하는 거죠 할지 말지.

평의원 오동석 : 일단 협의주체가 이렇게 되면 대학평의위원회는 의미가 없죠. 결국 중복되는 면이 있기는 하지만 애초에 사실은 이런 안을 제안했던 거 아닙니까.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서 이렇게 되고, 거기 보시면 평의회 차원의 감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평의회 존재 자체가 부정된 거죠, 이전에도 그랬고 이 사안에서도 그렇고. 그러면 이거는 이 자리에서 논의할 바가 아니고 교수회하고 동문, 학교 3주체가 만나서 동의를 해야겠죠.

평의원 이해진 : 오해를 하시는데, 동문대표라고 하는 것은 말이 너무 길어서 빠졌는데 대학평의회 동문대표예요.

평의원 오동석 : 그렇다고 한다면 감사반 구성안에 있어서도 그게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교수회 추천 2명, 동문회 추천 2명이라고 하기 보다는 교수회 대표도 여기 와 계시고 동문 대표도 여기 와 계시지 않습니까?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대학평의회에서 논의하라고 해서 추천하는 걸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평의원 이해진 : 저는 그게 반대인데요, 대학 평의회는 이 감사에 대해서 이 감사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내는 거지, 평의회가 그 감사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학생 대표도 2명 들어가야 되고, 직원 대표도 2명 들어가야 되고 그런 거지만, 그거보다는 대학 측, 교수 측, 동문을 제가 말씀드리 는 것은 강력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후원기관으로서 동문을 넣은 거지, 예를 들어서 학내 구성원 각각 대표 2인 그런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평의회에서 는 감사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내는 거지 평의회가 끼어서 감사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평의원 오동석 : 그렇다면 평의회 이 자리에서 이렇게 논의할 필요가 있을까요.

< 간서명 란 >



의장 박영무 : 논의를 정리하기 위해서 말씀 드리면, 이미 외부 감독청의 감사를 요청하기로는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엄정한 감사를 담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결의되어 있고, 그것을 담보할 만큼 충분한 제안이 여기 포함되어 있느냐 아니냐 거기에 집중해주셔야 됩니다. 그게 포함이 안 되어 있다면 이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평의원 이재호 : 감사의 대상 내용에 있어서 2007, 2008년 펀드투자 결정과정과 경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펀드 투자도 중요하고 그만큼 중요한 것이 분식회계입니다.

평의원 이해진 : 감사의 대상은 지난 번 학교 측에 제안한 교수회 안을 그대로 넣었어요.

평의원 이재호 : 분식회계가 들어가 있어야...

평의원 이해진 : 아닙니다. 이 내용 그대로입니다. 제가 논란이 있을까봐 학교 측에서는 다른 표현으로 되어 왔었는데 제가 대학 측으로 보낸 공문을 보고 쓴 내용입니다.

(추후 확인 결과 평의원회에서 발송한 최종안에 회계상의 하자가 감사 사항으로 기재되어 있음)


의장 박영무 : 분식회계는 당연히 들어있고, 그 보고서에 근거해서 감사를 하겠다는 거니까요. 재단이 관련되어 있는데 재단을 제외한다면 그런 감사는 의미가 없는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평의원 이해진 : 평의원회에서 재단을 감사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가 안돼요.

의장 박영무 : 이해진 의원이 잘못 생각하는 것 같은데, 평의원회가 감사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요청해서 감사기관이 감사하는 거죠, 감사를 요청할 권리는 충분히 있다. 감사를 요청해서 그 감사기관이 필요한 모든 사실을 충분히 감사하라고 요청하는 거지요.

평의원 이해진 : 그러면 우리 이재호 교수님이나 의장님 말씀은 학교에 한함이 아니라 이걸 어떻게 바꾸면 되겠습니까?

의장 박영무 : 학교에 한함이라고 하면 감사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없고, 감사의 목적과 전제를 보니까 많이 왜곡되어 있어요. 제21차 대학평의원회에서 결의한 바가 있습니다. 제21차 대학평의원회에서 결의한 내용에 비해, 제안된 감사목적이

< 간서명 란 > 

크게 왜곡되어 있어요. 이 안이 상정되었을 때 받아 들여 지겠는가? 상당히 의문이 듭니다.

평의원 이해진 : 조정해나가자는 말씀을 드렸는데 학교 측에서 평의회에서 낸 안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그런 부분도 물론 제가 노력한다는 것은 양쪽을 접근시켜나가기 위함이었어요. 지금 의장님께서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 목적인 바와 틀리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 일단 그것부터 말씀을 하자고 하시면 평의회에서 낸 안하고 이거는 틀립니다. 목적 자체도 틀려요. 평의회에서 낸 목적 자체는 재단까지 전드리자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금을 그었거든요. 펀드투자에 대해서 재단이 얼마만큼 관여를 했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총무처에서 한 것으로 결론이 난 거거든요. 그 뒷조사를 하시겠다, 그것은 저희의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과가 나타나서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잘못된 거 같다 라고 의견은 재단 측에 전달하게 되겠죠.

평의원 이재호 : 펀드 투자 결정과정에 재단이 많이 관여했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평의원 이해진 : 관여했습니까?

평의원 이재호 : 아니요, 가정이죠.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미리 제한을 두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의원 이해진 : 교수님, 그렇다면 이전 외부감사 의견 밖에는 절대 없어요.

평의원 이재호 : 사실은 그래서 외부감사 밖에 없다고 자주 말씀하시는 의견이...

평의원 이해진 : 외부감사에 대해서 재단까지 포함해서 외부감사를 하겠다, 이 부분에서는 저는 평의회 사안이 아닌 관계로 빠지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내부감사는 결국 그 물을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시군요.

의장 박영무 : 본질적으로 지금 새로운 안을 가지고 오셨고 많은 노력을 하셨지만, 지난 번 회의에서 언급한 엄정성과 공정성이 담보되는 그런 감사, 그리고 그 목적이 충족될 때 수용이 되지만, 만약 목적과 훼손된다면 그 결정을 우리가 반복할 수 없지요.

평의원 이해진 : 어떤 내용을 보고 그 내용을 의심하시는 건가요?

의장 박영무 : 제안된 목적에 처벌과 분란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해진 평의원은 감사를 요청하시는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평의원 이해진 : 처벌과 분란의 목적이 아닌 이라는 것은 제가 집어넣었는데, 제 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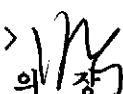
각은 이렇습니다. 이 내용이 어느 정도 일단락을 지으면서 어느 정도 처벌이 되던지 징계가 되던지 그런 선을 일단락 짓고 그 다음 내용을 갖고 논의할 텐데, 이 내용 갖고 1년 내내 끝 수는 없다고 생각해서 이 내용 자체를 갖고 여러 방향으로 파급되는 안 좋은 효과들 그 내용들을 저는 분란의 목적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거는 저희가 협의해서 단어를 고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장님, 제가 제안을 드리는 과정에서 저의 의미를 담아서 내놓은 안을 오늘 협의를 드리는 내용이지, 이 내용이 결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다만 학교 측에서 이만큼 할 수가 있다고 표현을 해줬으니까 저희도 의장님께서 다른 분께서 이 용어 선택이 잘못된 거 같다 그러면 저희가 수정할 수 있겠죠.

평의원 오동석 : 목적은 어떤 게 진실인지 진상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처벌이라든지 이런 것을 미리 논의할 수는 당연히 없는 것이니까요, 목적은 진상을 정확하게 조사하는 데 있는 것이고 그거를 학교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주체들이 객관적이고 공정하다 라고 인정할 수 있는 선에서 감사반을 구성하기 위해서 기존에 학교에서 정례적으로 하는 감사가 아니라 형식에 의해서 다양한 관련 주체들이 제안하는 감사관 구성을 했다고 보여 지는데요, 어떤 입장에서도 처벌과 분란의 목적이 아닌, 재발방지와 제도 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후의 문제이고 감사를 해야 하는 것 자체는 그걸 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죠. 형사처벌을 결정하거나 징계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감사 주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이후에 별도의 절차라든지 권한 있는 관련 기관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감사자체의 목적은 진상 조사를 한다 라고 하는 것이고 감사 대상이 명확하게 정해져있는 한도 내에서는 감사관이 구성되고 나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여기에서 그걸 정하기로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대강은 예측하고 있지만 아직은 명확하다고 보여지지 않는 이상은 새로 구성하자는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목적을 설정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장 박영무 : 펀드투자 과정하고 그와 관련해서 발견된 회계부정에 대한 사실을 밝혀내는 것이며 처벌과 분란의 목적이라는 표현은 잘못된 것입니다. 정확하게 사실을 밝혀내고 누가 어떻게 관여해서 이런 사태까지 갔는가를 밝혀내는 것이 감사의 목적입니다.

평의원 조중열 : 동문 추천 2명은 어떤 절차로 하실 생각이십니까?

평의원 이해진 : 제가 동문회장과 협의하겠습니다. 동문들로 이루어질 겁니다.

< 간서명 란 > 

평의원 조중열 : 동문들이 워낙 수가 많기 때문에 어떤 결정과정을 거치느냐가...

평의원 이해진 : 그건 교수회에서 어떤 결정과정을 거치나, 대학 측에서 어떤 결정과정을 거치나 동문회에서 어떤 결정과정을 거치느냐는 그건 각 기관에 맡겨 놓아야 하지 않을까요.

평의원 이재호 : 사실은 아까 오동석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내용도 그렇지만 형식에 있어서도 굉장히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이전 것은 평의원회의에서 추천하는 대표와 학교에서 추천하는 대표가 특별감사팀을 만들어서 감사를 시행한다, 기본 개념 자체가 평의원회 제안에 의해서 평의원회가 참여하는 특별감사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리고 지금 바로 전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봐도 완전히 성격이 다릅니다. 교수회와 동문과 학교 대학본부가 감사를 하는, 사실은 기본적인 성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평의원 이해진 : 기본적인 성격을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평의원회에서 추천해서 평의원회 일부의 내용으로 감사를 하는 것보다는 평의원회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관계로 자체감사를 하는 게 좋겠다 그거에 대한 감사원들의 비율은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맞지 조중열 교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평의원회에서 감사인을 3명을 추천한다고 하면 당연히 저도 동문 대표로 3명 추천하자고 할 겁니다. 여기서 추천할 이유가 없고, 저희의 목적도 전반적인 자문과 심의를 할 때 이에 문제가 있는 관계로 이렇게 이렇게 진행하는 게 좋겠다고 의견을 내는 거지 저희가 시행하는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사실 의사결정기관과 집행기관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평의원 이해진 : 이 안은 교수회하고 동문회하고 상호 논의할 내용처럼 보이거든요.

의장 박영무 : 기본 틀이 잘못된 거 같아요.

평의원 이해진 : 지금 의장님께서서는 평의원회에서 감사원을 추천하고 그런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장 박영무 :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 안은 이미 외부 감독청의 감사를 요청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 안이고 기관을 결정하는 과정이 남아 있었는데, 그 결의한 안 만큼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면 새로운 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해서 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평의원 이해진 : 지난 번 평의원회 했을 때 내용을 다시 한 번 언급하시는데요. 지난 번 평의원회 의사결정 과정도 하나하나 짚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 간서명 란 >
의장

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교수님들 이외에 직원분들 이외에 그 내용을 상세하게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참여를 했고, 제가 빠지고, 꼭 제가 빠졌다는 것보다 저와 박철균 평의원이 자리를 비웠다고 들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만장일치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이의를 제기하고 싶어요.

평의원 이재호 : 그럼 빠진 회의에서 결정된 것은 이의제기할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평의원 이해진 : 예를 들면 거기 참석자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가(可)” 로 표현한 분들에 대한 명단이 없어요. 그냥 평의원회 전체적으로 만장일치로 결의한 것으로 되어 있죠.

평의원 이재호 : 그럼 다시 읽어드릴까요? 그 전에 평의원회 회의록을...

평의원 오동석 : 그 만장일치는 참석자의 만장일치를 말하는 거죠.


평의원 이해진 : 그래서 제가 기획팀에다가 참석대상자가 아니라 참석자로 해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평의원 이재호 : 그거야 당연히 말씀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이석 부분에 대해서도 그 전에 회의록에 기록하지 않았었고 저번 회의록부터는 그런 논의가 있었고 기록하는 것이 타당한 부분이 있으니 기록을 하는데,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 시점에 그 자리에 참석한 의원들 만장일치로 결정된 것이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평의원 이해진 : 저는 의미가 지난 번 회의로 다시 돌아가서 외부 감사를 의뢰하기로 결정했으니까 거기에 준하는 내용이라는 말씀이셔서 그렇다면 제가 그 안을 외부 감사에 준하는 안을 대학 측에 제시해서 그걸 받아들이겠냐고 협의하는 게 맞지 기존에 저희가 낸 안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총장직무대행과 총무처장과 기획처장한테 우리 쪽에서 냈던 안이 사실 이런 안이었다 이걸 어느 정도 수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나타난 게 바로 협의안이죠. 그렇다면 이걸 왜 시켰느냐는 거죠.

평의원 이재호 : 그 말씀은 맞습니다. 사실은 좀 전에 논의를 제가 놓쳤는데요, 정확하게 그때 기준은 뭐였냐 하면 이 전에 평의원회 안으로 학교에 내부감사가 되면 이 정도 되어야 한다는 그 안을 기준으로 하셨던 거지요. 기준자체는 외부감사안이 기준은 아니었지요.

평의원 조중열 : 한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휴식을 하면서 기록을 하지 않고 각자의 생각을 이야기를 하면서 난상토론을 좀 합시다.

< 간서명 란 > 

평의원 이재호 : 동의합니다.

의장 박영무 : 그렇시다. 10분정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정)

의장 박영무 : 다들 들어오셨나요? 여러 가지 의견 차이가 많이 있는데 오늘 충분히 얘기는 안 될 것 같으나, 오늘 얘기 하시고 추후에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합시다. 좀 더 얘기를 진행하시죠. 발언 안하신 분들 말씀 좀 해주시죠.

평의원 주동표 : 감사 관련해서 학교 측하고 협의하시면서 상당히 난항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평의원 이해진 : 별로 반대의견은 없었어요.

평의원 주동표 : 이해진 평의원께서 제안하신 내용입니까 아니면 학교 측에서 제안한 건가요?

평의원 이해진 : 제가 제안 드렸습니다.

평의원 주동표 : 쉽게 수락을 하던가요?

평의원 이해진 :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 동문회가 학교에 강력한 후원기관과 아울러서 잘못된 점은 명확히 지적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채찍질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로 말씀드렸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외부 학내 여러 가지 직접적인 의사결정을 하진 않지만 외부 기관이지만 누구보다도 학교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서 아마 수용을 하셨겠지요.

평의원 이재호 : 박철균 평의원 의견서는 언제 받으셨나요?


평의원 임재수 : 어제, 어제 오후인가 봅니다. 어제 오후예요. 박철균 평의원이 교수회가 있듯이 직원회 의장 있거든요, 직원회 의장으로서 학교발전에 저해되는 문제는 당연히 신중하실 거라 이해합니다.

평의원 이재호 : 지금 이 방안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하셨는데 미리 논의하신 건가요?

평의원 임재수 : 박철균 의원이 저한테 전화해서 묻더라고요. 저도 이해진 평의원께 전화했죠. 왜냐하면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전차 회의 때 총장님 면담 진행된 사항을 메일로 주시기로 했거든요, 회의 날짜가 잡혔는데 궁금하고, 처장님, 총장직무대행님 논의내용을 메일로 기획팀에서 받았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저한테도 주셨습니까?

평의원 이해진 : 죄송하지만 제가 계속 이동 중에 있어서 기획팀 진성호 선생께 제

< 간서명 란 > 

가 전화 드려가지고 저한테 전화 온 분이 박철균 평의원, 총학생회장, 임재수 평의원 세 사람 전화 왔었어요. 세 분 이메일 제가 모르니까 보내 드려달라고 했어요. 사실 제가 의장님이나 교수님들께 찾아뵙고 상의를 드릴까 했는데, 아시다시피 제가 회사 운영하는데 시간을 그만큼 못 뺐습니다. 죄송합니다.

평의원 임원형 : 협의안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구성원이 참여를 직접 참여는 아니더라도 형평성이라든지 좀더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점과 외부에 알려져서 이미지 타격이 높다라는, 외부에 알려질 가능성이 작아서 이미지 타격이 적다는 점과 추천을 하게 되면 전문성까지 담보가 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강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외부에 알려질 가능성이라든지 외부 감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굳이 평의원회가 아니어도 실질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철균 평의원 의견에 대해서도 교과부 감사를 할 때 투서에 의한 감사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미 불특정 다수의 많은 학우들이 알고 있고, 관심 있는 교직원 선생님들이나 교수님들도 다 알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학생들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서도 이거를 단독으로 학교를 위해 끈질려야 되냐 학생들 표현으로 그런 의견들이 있고 학생회 조직에서도 그런 의견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사회에서 충분히 납득이 될 만한 수준의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외부에 알려질 가능성이 낮지만 않을 것 같아요. 학생사회가 납득할 수준이라고 하면 학생들 상식에 맞는 거 같거든요. 아까도 교직원 대표가 말씀해주셨는데 교직원 입장에서는 방어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학생들 입장에서는 큰 피해잖아요. 물론 이걸로 인해서 교직원 분들 월급이 깎일 수도 있고 학교 망신을 당해서 직장이 명예를 잃을 수도 있고, 동문 선배님들께서 내 모교가 저렇게 되는구나 라는 자괴감도 중요한 피해인데, 실질적으로 당장 학생들, 그동안 등록금을 내왔던 학생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주체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에게 과연 이런 일 있었어요, 이렇게 재발방지 안하기로 했습니까라고 말한다면 과연 납득을 할 것인가 생각을 했을 때 납득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 평의원회에서 감사(안)을 봤을 때 이런 멘트가 있더라고요 진상규명, 우리의 의문점 해소하고 실질적 진실을 파악하고 이후에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기 위한 감사 목적이 있더라고요. 저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는 거에서 가능성을 많이 열어두고 이해를 했습니다. 당연히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잘못이 있다면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고 물어내라 다 물어낼 수는 없어도 징계까지 열어놨던 것으로 이해를 했었는데요 학생들도 그렇게 이해를 할 것 같아요, 평의원회 안은 이랬었다 라고.

< 간서명 란 >
의장

실질적으로 그 정도는 돼야 학생들이 납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협의 안에 대해서는 학교가 받아들였다는 것만으로도 고무적인 효과라고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학교가 받아들였다는 것 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좀 더 나은 감사(안)이 아니면 학생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학생들 개인적으로 투고를 하거나 단위 학생에서도 충분히 문제제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평의원 이해진 : 안들이 만들어지고 협의되는 부분은요, 대표 그룹의 대표되시는 분들이 와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가능성을 최소화시키고 협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럴 수도 있다 저럴 수도 있다고 진행된다면 방안을 세우는데 상당히 애를 먹게 됩니다. 문제 제기만 좌악 해놓고서는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론이 없을 거 아니냐, 일단 방법론에 대해서 학교 측하고 논의한 내용을 우리가 수공을 하고 어떤 사건이 벌어질 때는 매듭이 지어져야 돼요. 매듭 없이 끝까지 간다면 아주대학교 뿐만 아니라 배겨나는 조직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어느 정도로 서로 납득한 수준에서 해결해 나가는 방법 그 방법을 찾고자 하는 거거든요. 이 내용이 학생뿐만이 아니고 학부모 대표도 계시는데 학부모 대표가 각 학부모들한테 이런 사실을 알렸다 학부모님들이 그러면 아우성이시겠죠, 그렇게 사건을 자꾸만 확대시키면 끝없이 번져나갈 겁니다.

평의원 조중열 : 제가 발언 좀 하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 감사가 일종의 청문회처럼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외부에 공개가 안 된다는 그거를, 외부라는 게 애매한데, 가능하면 학교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조사과정, 조사 결과가 웬만하면 다 볼 수 있게 하고 청문회 조사에서 누군가를 소환해야겠다고 했을 때 일부 소수의 위원이 이 사람을 조사해야 되겠다고 했을 때 다수 의견으로 그 사람 조사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하는 그런 가능성이 없다면 한 사람 또는 두 사람이 조사해야 되겠다고 하면 이걸로 지금 펀드사태를 마무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의원 이해진 : 교수님, 청문회라는 부분이 일반 국민들도 많이 옆에서 봤잖습니까. 청문회 할 때 항상 반대의견은 마녀사냥식의 청문회가 될까봐 많이들 우려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같은 조직 내에 계신 분들, 여러분들 동료 교수님들이 보직자이고 여러분들 같은 직장 동료분이 보직자임을 생각할 때,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잘해보자는 식으로 끌고 나가고 싶지 소위 자칫 청문회가 마녀사냥 식으로 진행될 경우에.

평의원 조중열 : 공개를 해서 진행을 한다는 뜻입니다.

평의원 이해진 : 네, 어차피 총장대행과 평의원회 쪽에 결과가 보고가 된다면 임원

< 간서명 란 >
의 장 

형 평의원 말대로 모두가 공유하게 되겠지요. 결과를 놓고 너무 선불리 속단을 해서 학교와 이런 내용으로 진행하자는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다던가 그런 내용은 최소화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평의원 조중열 : 여기서 제안하는 감사가 각 감사위원이 독립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감사위원 6명이 앉아 있고 소환해서 조사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평의원 이해진 : 저는 사실 감사반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합의하에 진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제가 그 범위가 얼마만큼 될지 모르겠어요, 봐야 될 범위가. 직원들 얼마만큼 연루되어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감사반에다 일임한다는 뜻으로 협의를 진행한 거거든요.

평의원 조중열 : 그렇게 하면 오도 가도 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관련 있다고 되는 사람은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 소환하더라도 와야 된다는 그런 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평의원 이해진 : 감사반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감사하겠다는 안을 들어보지 않겠습니까?

평의원 조중열 : 그거를 제 생각에는 미리 정해놔야 하지 않겠습니까.

평의원 이재호 : 저는 이 안 자체는 아까 문구상의 얘기를 했지만, 상당 부분 문구의 수정이라든지 아니면 재해석이라든지 명확하게 해야 할 부분들이 꽤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물론 이견이 있을 수 있고, 이 부분을 여기서 계속 논의를 하실 수가 있을지, 게다가 이 안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이전에 대학평의원회가 제안한 거는 조금 색깔이 다른 안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안을 갖고 여기서 논의해서 결정하기는 어렵지 않나, 조금 시간을 갖고 다음 회의에서.

평의원 이해진 : 교수님, 임재수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직원들의 모임도 있고 동문회 모임도 있고 학생, 교수 모임도 있습니다. 각각의 내용들을 안을 갖다놓고 이 부분을 합의도출을 하면 세력다툼밖에 안 될 거 같아요.

평의원 이재호 : 바로 그런 것을 걱정하기 때문에 지난 번 회의에서 각각 가서 말씀 드린다거나 협의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기준이 있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통일성을 기하자는 아니면 중구난방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평의원 이해진 : 제가 제안을 드리면 교수님들께서 이 안에 대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안을 만들어 오시고 저희는 저희대로 만들고 직원은 직원대로 만들고 학생들도 학생들대로 만들어서 협의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 간서명 란 >

의장

평의원 이재호 : 그것은 실제로 협의를 안 하지는 말씀이시지요. 이 안에 있어서 저는 이 취지나 이런 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가 주저하게 만듭니다. 하나는 처벌과 분란의 목적이 아닙니다 라는 표현이 과연 어떤 백그라운드에서 나왔는지 결국은 그 이전에 안이라던 지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제기 하는 거라든지 처벌과 분란의 목적이라는 시각이 들어간 게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형식에 있어서 평의원회에서 의결돼서 말씀들을 나누고 표결을 한 것이기 때문에 안이 나왔을 때 평의원회 의장에게 이것을 알리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중에 하나 일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아까 시점을 여쭙 본데서 알 수 있듯이 몇몇 평의원들께서는 어제 공유하셨고 정작 평의원회 의장께서는 오늘 회의 자리에서 이걸 보게 되는, 물론 이런 저런 상황 말씀 하셨지만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평의원 이해진 : 그 내용이 잘못됐다면 지극히 제 개인적인 문제였고요, 처벌과 분란은 제가 정확히 제 의도를 말씀드리면 저는 사실 이 내용이 학교 전체적인 시스템으로 작년 평의원회 때 끝난 걸로 알고 있는 것을 다시 한 번 진행하는 것이라, 물론 처벌이라는 부분이 다 공정하면 좋겠는데 반대세력들이 있잖아요. 처벌로 가게 될 경우에 내부적인 분란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의문점, 또 하나는 결과가 나왔을 경우에 문제점을 지적하면 문제점이 또 문제점을 낳는 계속 연속적으로 그 문제점을 지적해나가는 여파가 확산되어 나가는 그런 것을 생각해서 분란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내용은 의미가 이런 내용이 아니다 라고 하면 용어의 선택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바꾸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적으로 사과드릴게요, 먼저 평의원분들께 즉 말씀 안 드린 내용은 사과드리는 데, 펀드 투자 감사 안에 대해서 평의원회 의제로 올라온 것은 왜 올라왔습니까? 저는 평의원으로서 사전에 이런 이런 의제가 올라온 다는 것을 받은 바 없습니다. 제가 엉뚱한 내용으로 말씀드리는 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제가 잘못했어요. 저한테 연락 오신 분들한테 빨리 메일로 연락드리라고 말씀드렸고 죄송하지만 제가 여기 계신 분들 연락처를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몇 번 기획처에다가 저한테 평의원회 연락처를 달라고 말씀드렸어요, 저한테 두 번인가 보내주셨는데, 제가 파일 못 열었어요.

평의원 이재호 : 설령 이 안을 갖고 다시 생각해본다고 해도 그렇다면 이때는 학교와 교수회 동문에 해당하는 분들이 이 안의 구성자로 하고 그러고 나서 여기 평의원

< 간서명 란 > 
의장

회에서 추인을 받든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 과정이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졌으면 좋았는데 사실은 상당히 여러 가지 걱정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었지요.

평의원 이해진 : 교수님, 저 지난 평의원회하고 오늘까지 제가 사실 총장직무대행하고 일정을 제일 먼저 잡았어요. 그리고 총무처장님하고 기획처장님한테는 제가 이렇게 일정 잡혔으니 그 전에 나 좀 만나자고 해서 만났어요. 제가 사실 서울서 하루 내려왔습니다. 내려온 김에 이 내용을 확정시키고 가려고 연속해서 만나고 난 다음에는 바로 이 방에 들어와서 기획처장하고 합의(안) 잡았어요. 합의한 사항을 문장을 잡아서 보내라 그랬더니 그 다음날 왔더라구요. 사실 일주일 남짓했죠? 그 동안에 제가 학교일을 얼마만큼 많이 봤겠습니까. 이 안대로 한번 진행해보자 하면 그 부분은 얼마든지 협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감사가 진행됐을 경우에 학교 측에서는 지난 번 안이 일주일이었고 평의원들은 한 달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학교 측에는 일주와 한 달 그거에 대해서 평의원 안이다 학교 안이다 하지 말고 감사반 자체적으로 안을 잡도록 만들었거든요.


의장 박영무 : 아까 임원형 의원 말했듯이 감사는 누구나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의원회에서 청구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학교의 여러 주체로 구성되어있어서, 대표성이 있어서 그렇지, 감사는 누구나 청구할 수 있어요.

평의원 이해진 : 의장님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부분도 그 부분인데 평의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합의해서 외부 감사(안)을 의퇴할 이유가 없다, 교수님 몇 분 학생들 몇 사람 해서 감사 청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난 번 평의원회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평의원회에서 그거를 만장일치로 가결할 이유가 있느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별도라고 생각합니다.

의장 박영무 : 충분히 얘기를 해서 합의가 되면 제일 좋고 그렇지 않으면 단체별로 다른 방법을 찾아볼 수도 있겠죠.

평의원 이해진 : 우선 단체뿐만 아니라 몇몇 개인이 감사 요청할 수도 있겠죠.

평의원 이재호 : 그 부분은 사실 과거니까 팩트만 확인하면 되고, 별도 평의원회 이름으로 갈 이유가 있느냐 할 때는 가결 하자는 안이 나왔으니까 그랬던 거고, 이미 그것이 가결된 다음에는 그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개인적인 소회에 해당하겠죠. 말씀의 취지는 알고 그렇지만 그것이 구속력이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중요한 말씀인 것은 맞고, 그 취지에 대해서 존중합니다. 근데 지금 이 건을 물론 빨리 결정을 내리고 탁탁 진행시키는 것이 제일 좋기는 하겠으나 여기 말씀하

< 간서명 란 > 
의 장

신대로 이 안은 이해진 의원 김관균 평의원 해서 대학 본부 측과 논의를 하신 거고 이 부분에 대해 교수회의 상당한 의견 교환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지금 기본적인 성격 자체는 달라진 부분이고 거기에 대해서 갑갑하시겠지만 지금 회의에서 이거를 다 얘기하고 확정지을 수 있는 것은 거의 불가능 하지 않을까...

평의원 이해진 : 교수님 그렇다면 평의원회에서는 펀드투자 감사 협의에 대해서는 오늘로 종결하고 교수회로 넘겨버리죠? 이거 갖고 다른 평의원회 중요한 안전들, 특히 발전적인 안전들을 도저히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의원 이재호 : 지금 진행해야 될 안전이 뭐가 있습니까?

평의원 이해진 : 저는 누차 말씀드렸지만 발전계획에 대해서 논의하고 싶어요. 한 번도 올라온 적이 없어요.

평의원 이재호 : 발전계획에 대한 논의를 다음 안전으로 채택을 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평의원 이해진 :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평의원 이재호 : 발전계획에 대해서는 기획처장이 와서 설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평의원 이해진 : 기획처장 뿐만 아니라 작년에 기획처장한테 얘길 드렸어요. 예를 들면 나는 기업체에서 회사 사업계획도 재무계획이 빠진 발전계획이 도저히 있을 수 없다, 그건 또 재단사항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재단사항이라고 하더라도 발전계획이 이렇게 나갈려니까 재무계획이 이렇게 필요하다 이렇게 한번 예산팀과 협의한 적이 있느냐 그게 진짜 우리가 5년 후에 어디로 가야하는가 목표점이 나오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단계를 거쳐야하고 이 단계에서는 무엇이 얼마나 필요하고 이렇게 하면 누가 협조적으로 안 나오겠느냐 저는 한 번도 재정계획 본 적이 없거든요 재단 측에 확인했어요, 학교발전계획 알고 있느냐고. 모른대요. 저는 오히려 평의원회에서 그런 것을 다루고 싶거든요.

평의원 이재호 : 사실은 오늘 안전을 보시면 대학본부의 약학대학 설립 관련 재정보고 및 관련 예산 계획 논의, 이것은 총체적인 발전계획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겠죠.

평의원 이해진 : 제가 진이 빠지는 이유가 지난 번 그 전번 평의원회 때 말씀드렸던 내용을 번복해서 말씀드렸어요, 그것도 굉장히 강하게. 의장님 이하 평의원분들께서 각자 노력을 하자 그래서 사실은 제가 김관균 평의원을 같이 해서 안을 만들어가지

< 간서명 란 >
의 

고 왔어요, 협의안을. 아마 사실은 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김용호 평의원이 총장님 뵈었다고 했죠?

평의원 김용호 : 네.

평의원 이해진 : 제가 만나 뵈 이후에 뵈었죠? 저한테 전화 왔었어요. 총장님 만나 뵈었냐고, 그래서 자네도 한번 가서 만나 뵈어라 하고 얘기했어요. 그러고 나서 임재수 평의원님 전화하셨고, 박철균 평의원님 전화하셨고. 사실 교수님들께는 전화 한번도 못 받았습니다. 아마 교수님들께서는 이해진 전 동문회장이 만나고 왔겠지 라고 판단하셨겠고, 그리고 제가 자료를 릴리즈(release) 못해 드러가지고 진행이 된 거야 안 된거야 의구심을 갖고 오늘 참석을 하셨을 수도 있는데, 저희 평의원회에서 보낸 내용을 참고로 해서 안을 만들었던 말이에요. 그런데 교수회에서 다시 협의를 하시겠다고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안을 갖고 직원도 직원회에서 협의를 해야 할 거고 이렇게 표현해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제가 기업 있을 때 노사 합의가 결국은 전원 투표로 결정나는 게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러면 우리 평의원 대표성 그야말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의원 이재호 : 아까 왜 제가 그런 말씀드렸나 하면, 아까 이미 이해진 평의원도 동의한 것 아닙니까, 이 안의 성격이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 안은 평의원회와 학교가 평의원회가 제안해서 공동특별감사를 시행하는 것이었고, 지금 이 안은 이해진 평의원 자신이 뭐라고 설명하셨나하면 결국은 학교하고 교수회 그리고 그 사이에서 말하자면 충분히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객관적인 주체인 동문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자는 안이 된 겁니다. 따라서 여기에 있어서의 주체가 된 것이 학교와 교수, 동문회 인 거고 그러니까 교수회에서의 자체적인 의견교환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의견이 쉽게 수렴이 되었다면 여기서 진행이 할 수 있었겠지만 갑작스럽고,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고, 몇 가지 문안이라던지 내용에 있어서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안을 위해서 수고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가능하면 빨리 이 안을 마무리 짓고 싶어 하시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어쩔 수 없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평의원 이해진 : 지난번에 감사위원 구성이 대학측 추천 3명, 평의원 추천하는 3명이었나요? 저는 사실상 평의원회 추천보다는 교수회 추천을 더 존중하고 싶었어요. 그랬던 내용이 여기 평의원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 차지하고 계신 분들이 교수님들이고, 대학 상대 쪽, 대학측 그리고 제3의 기관인 동문회를 넣은 거거든요. 그럼 사

< 간서명 란 >
의장

실 기존에 평의회에서 의견 추천하면 그것도 물론 교수님들 한 분 추천하고 동문회나 직원에서 1명 추천하고 학생에서 1명 추천하고 그럴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내용을 미리 염두에 두고 세 그룹으로 나뉘었을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중립기구인 동문회를 넣어놓은 내용 밖에 달라진 게 없을 겁니다. 아마 평의회에서 3분을 추천한다고 해도 제가 동문회에서 한 사람 추천한다고 분명히 말씀 드릴 거구요.


평의원 임재수 : 아마 그건 평의원이 참여하는 게 아니고 평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하겠죠. 감사라는 것은 전문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아무나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셔야 될 거 같고, 제 생각은 이재호 교수님은 감사의 본질이 훼손되는 것이 우려되는 게 아니고 다른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말을 빙빙 돌리지 마시고 감사를 해서 결과가 교수회에서 원하는 데로 만들어지는 것을 원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배제 하자는 겁니다. 어떠한 방법이던지 간에 우리가 해보지도 않고 왜 처벌을 논하고 결과를 논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펀드투자에 대해 이익이 낮았도 지금같이 여러 날 동안 이렇게 논의 되어야 할 것인지 잠깐 안 제실 때 다른 평의원과 얘기하는 적이 있습니다. 왜 펀드투자 문제가 평의원 회의 안전에서 거론 되어야 되는 겁니까? 평의회 운영 목적이 자문심의기구입니다. 직원 개인비리 문제도 아닌 내용으로 너무 깊게 몇 년씩 몇 시간씩 논의는 너무 지겹고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평의회의 평의원이 이런 줄 몰랐어요. 평의원이 직원들을 감사하는 것 같아요. 직원들 뒤편 캐고 다니고... 이해진 평의원께서 어렵게 가지고 온 협의안 가지고 해보자는 거죠. 거기서 나오는 문제를 가지고 또 논의해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왜 지금 처벌을 어떻게 하고, 형사를 어떻게 하나...

의장 박영무 : 처음 이 얘기 나올 때 제가 모두에 드린 말씀인데, 전직 총장이나 현 대행도 감사의 대상이 될 터인데 직원이 할 수 있겠어요?

평의원 임재수 : 펀드의 전결권이 총무처장이라면서요.

(임원형 평의원 이석)

의장 박영무 : 학교의 최고 책임자는 총장이고, 총무처장은 스텝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감사의 하이어나키(hierarchy)상 이들에 대한 감사가 어려운 애긴데, 안 될 텐데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평의회에서 교수회의 '펀드 및 회계부정 조사 보고서'에 대한 보고를 듣고 외부감사로 결정이 됐었는데 딱 얘기를 자꾸 하거든요. 직원이 전임총장하고 현 총장직무대행을 불러놓고 조사를 할 수 있겠어요? 또 데이터 감사 도중에 재단이 나오면 재단이사장을 대상으로 감사를 할 수

< 간서명 란 >
의 

있겠어요?

평의원 이해진 : 저는 이 논의에서는 빠지겠습니다. 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총장과 재단을 상대로 감사를 하시겠다고 하면 의장님 뜻대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정확합니다 당연하죠. 그 내용은 평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제가 같이 참여한 자리에서 총장을 놓고 재단을 놓고 불러다놓고 감사를 하겠다, 이 논의에서는 제가 빠지도록 하겠습니다.

평의원 이해진 : 감사의 전체적인 목적이 뭐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협의하는데 마치 총장을 건인해서 재단을 겨냥해서 이게 되겠냐는 말씀을 하시니까 사실 저는 논의할게 없네요. 그거 하면 외부에 고발해서 감사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목적이라면 이 안에 대해서 제가 쫓아다니면서 합의안을 (임원형 평의원 복귀) 도 출해 내려고 했던 노력조차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을 그렇게 내놓고 계셨으면 명확히 말씀해주셨어야죠. 그건 총장을 데려다놓고 감사를 해야 될 사항이고 재단을 불러다 놓고 감사를 해야 될 사항이니까 이걸 외부에 넘기겠다 그런 말씀 주셨으면 저는 반대 안합니다.

의장 박영무 : 관련 데이터가 나오면 물어봐야겠죠.

평의원 이해진 : 그건 감사반에서 총장에 물어보든 재단 측에다 물어보든 감사반하고 협의를 해야 될 내용을 지금 의장님께서도 마치 감사를 하려면 총장을 불러다놓고 물어야 되고 재단을 불러다놓고 물어봐야 된다 라는 전제조건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의장 박영무 : 데이터가 나오면 당연히 물어봐야 될 텐데, 감사반이 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평의원 이해진 : 가능하겠죠.

의장 박영무 : 이제는 된다고 하십니까?

평의원 이해진 : 아니, 의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감사를 평의회에서 협의하는 목적이 임재수 평의원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학교가 잘 나가고 잘 되고 진상이 어떻게 잘못됐느냐 이걸 좀 알자는 취지로 말씀 드리는 건데 갑자기 거기서 총장대행에 대해서 할 수 있겠느냐, 이걸 마치 타깃이 거기 있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의장 박영무 : 오버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평의원 이해진 : 제가 오버했습니까? 제가 오버했다면 사과를 드리고 전 그렇게 들

< 간서명 란 >
의장

됩니다.

평의원 임재수 : 저도 이해진 평의원과 같이 그렇게 느껴집니다. 펀드문제는 교수회의 목적과 직원회의 목적이 다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회의가 진행이 안 되고 여러 날 동안 몇 년 동안 끌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의장님께서 충분히 아실 텐데 의장님은 방관만 하고 계시는데 분명히 의장님께서 정리해주셔야 합니다. 회의가 난항을 겪고 있는데 의장님은 지금 논의하십시오 라고만 얘기하고 계십니다. 의장님께서도 뭘 원하시는 겁니까? 원하시는 게 도대체 뭐예요? 원하시는 것을 내놓으세요.

평의원 이재호 : 말씀드리겠는데 외부감사 하는 게 좋겠다고 동의할 때도 자리에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평의원 임재수 : 자리에 없었어요, 제가 불참했었습니다.

(이해진 평의원 퇴실)

평의원 이재호 :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임재수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 아까 직원들 뒤를 캐고 이런 말씀들은, 그것은 아마 흥분하셔서 말씀이 지나치셨던 거 같고요.

평의원 임재수 : 그렇게 느껴집니다.

평의원 이재호 : 실제로 분식회계 행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분식회계는 누가 했습니까?

평의원 임재수 : 그런 문제들을 알아보자는 거 아닙니까?

평의원 이재호 : 있었죠. 있기는.

평의원 임재수 : 이재호 평의원께서 있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평의원 이재호 : 그럼 조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평의원 임재수 : 그러니까 알아보자는 거잖아요.

평의원 이재호 : 그런데 조사하자는 것에 대해서 직원들 뒤를 캐고 있다고 표현하시니.. 당연히 직원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렇지만 걱정하신다고 해서 그것을 거꾸로 실제로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도 이거 뒤를 캐고 있고 이게 말이 안돼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겁니까? 실제로 잘못이 없었던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그렇게 말씀하셔도 할 말이 없겠습니다만 정말 문제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데 그 문제를 갖고 조사하는 행위에 대해서 결국 직원들 뒤를 캐고 등등등 이렇게 되는 거니까 직원들로서는 싫다. 당연히 마음이 싫겠죠. 누가 조사받

< 간서명 란 >
의장님

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직원들만이 대상은 아닙니다.

평의원 임재수 : 평의원회에서 해야 될 일은 아니라는 거죠. 평의원회 운영규칙에 의해서 일을 해야지 계속 펀드에 대해서 몇 년씩 얘기를 하니깐 소문이 이상하게 나고 평의원에 대해 직원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는 겁니다.

평의원 이재호 : 그럼 왜 그게 2 년씩 끌게 됐습니까, 작년에 처음 이 얘기가 나왔을 때 해결했어야 했습니다. 결국 그런 인식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니 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본 감사는 처벌과 분란의 목적이 아니고' 에서 분란의 목적이 됩니까?

평의원 임재수 : 이것은 학교 측의 얘기가 아니고 이해진 의원의 생각을 적어놓은 거예요.

평의원 이재호 : 결국은 평의원들 중에서도 이것은 처벌과 분란의 목적이 ...

평의원 임재수 : 저도 마찬가지로요 이 문제 가지고 누가 처벌을 받고 징계를 받고 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아니 징계 받을 일이 있으면 징계 받아야죠. 심지어 의과대학에서 교수들도 작년에 생각 안 나세요? 결국은 사포내고 나간 사람 생각 안 나세요? 쫓겨난 사람 없습니까? 문제가 있으면 교수들도 징계 받고 쫓겨납니다. 그런데 왜 직원은 그러면 안 됩니까?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저는 직원이니깐 그래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교수고 직원이고 이 부분에 무슨 성역이 있습니까? 조사과정에서 문제가 없다면 다행스러운 것이고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에 합당하게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면 됩니다. 근데 그게 되려면 조사가 되어야죠.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학교에 한함, 뒤에 한함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한계를 뒀기 때문에 자주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평의원 임재수 : 교수님께서 이해하실 게 이것은 이해진 평의원께서 처장님들이나 총장직무대행께 우리의 의견을 접근시키려고 범위를 정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전제해야 됐을 거라 생각됩니다. 아마 그런 취지로 이해진 평의원께서 만드신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하여튼 협의안 문구만 가지고는 학교의 생각은 아니라는 거죠, 개인의 생각인거죠.

평의원 이재호 :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도 중간에서 이런 저런 조정을 해보고 협의를 해보고, 예를 들어 제가 우리 쪽 대표로 나가서 안을 만들었는데 결국 갖

고 왔는데 이거 곤란하다는 얘기를 들으면 속상하죠, 저도 상당한 노력과 시간을 들였는데, 말하자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능하면 받아들여지고 빨리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아까 말씀도 들었고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석되는 것이 있으니까 범위를 키운다거나 이렇게 하자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교수회도 얘기를 해 봐야 할 테고 그런데 굉장히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 성격의 변화가 있고 그리고 이것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시간을 갖는 게 어떻겠느냐, 지금 여기서 이걸 논의한다고 해서 확정지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제안을 드린 겁니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아, 이게 굉장히 예단을 하고 보고 계시구나 하는 것은 알겠습니다.

의장 박영무 : 제가 염려하는 것은 이해진 의원도 그렇고 다른 몇몇 분들도 그러신데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시다만, 외부 감사를 받게 되면 학교가 피해를 받게 된다고 하시고, 처벌? 분란?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 이런 기본 마인드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은 사실대로 밝혀야 합니다.

평의원 임재수 : 사실을 밝히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 왜 자주 외부에 알리자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재호 평의원님은 잘 아실 거예요. 스타 의사 한 분이 병원에 차지하는 영향력은 엄청나게 큼니다. 반대로 아주대학교에서 미치는 어떠한 조그마한 문제가 언론을 타면 병원 신뢰도와 환자수는 눈에 보이게 줄어요. 의장님은 입바른 소리라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 그래요. 항상 의료원장님께서 경쟁병원 생기면 아주대병원 큰 일 난다 말씀하시는데, 지금 경쟁 병원 없어서 이렇게 안 주하고 있는 거지 옛날 1994년도에 아주대학병원의 이미지하고 2010년도의 병원 이미지 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많이 떨어졌어요. 쉽게 얘기하면 화성, 평택, 안성, 수원에 있는 시민들이 성빈센트병원하고 아주대병원 밖에는 갈 데가 없으니 오시는 거지 경쟁병원 들어오면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병원은 지금부터 긴장하고 대비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이에요.

의장 박영무 : 그게 감사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평의원 임재수 : 아주대 병원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졌을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장 박영무 : 이제 학교가 제대로 밝혀내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경중을 한 번 따져보세요.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학교와 학생들을 위하는 건지.

평의원 임재수 : 2007년도에 모든 대학에서 은행 이자보다 높은 펀드투자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의장 박영무 : 이 문제는 펀드 문제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학교가 회계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자꾸 하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이번에 분명히 시정이 되면 우리 학교 회계만큼은 투명해지고 앞으로 학교 발전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아마 가장 혜택을 볼 것은 학생들이겠죠.

평의원 임원형 : 며칠 전에 기사를 보니까 작년도 사립대학교들이 1년에 남긴(주동표 평의원 이석) 적립금 Top5가 죽 나와 있더라고요,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는 몇 백억을 1년에 남겼더라고요. 비슷한 서강대라던 지 이런 곳도 백억씩, 서강대가 200억이었습니다. 이게 1년에 몇 백억이고 이대는 총액이 7천억원 이더라구요, 그러니까 사실은 깜짝 놀라는 거죠. 적립금 남겨놓고 보면 이게 경쟁력으로 보면 우리가 이대보다 돈이 없구나 하고 느낄 수 있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 저 학교는 무슨 돈으로 운영하길래 그 많은 돈이 남을까 하고 다른 학교들은 의구심이 생깁니다. 현재 매년 학교에서 등록금 협의회를 하는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회계는 굉장히 이해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학생회 임기는 1년이고 1년 총학생회 하면서, 제가 우연히 기회가 돼서 학생회를 오래 하게 되면서 등록금 협의회를 두 차례 관심 있게 보는 것은 네 차례 정도 보게 되면서 문제를 알게 됐지만, 사실은 일반 학생들이 학교의 자금운동을 이해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상식적으로도 어렵고 전문성으로도 굉장히 어려워요. 2006년도 총학생회 때, 학생사회에서도 등록금 협의회 하는 게 굉장히 이슈화가 많이 됐던 해입니다. 굉장히 집행율이라는 식으로 해서 학교의 집행율이 낮다는 식으로 해서 이슈화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등록금 못내겠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학교는 몇 %이상의 인상율을 하면서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학교와 학생이 합의를 해서 등록금이 올랐는데요, 하지만 그 해 2006년, 2007년, 2008년 그 때도 등록금이 펀드투자 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아까 그 보고서가 사실이라면 유동자금 중에도 일부가 투자가 됐는데요, 아무도 학생들이 모르지 않습니까? 심지어 알 수 있는 몇 가지 루트가 있겠죠, 그렇다 해도 분식회계가 일어난 것을 모르겠죠. 학교는 학생들한테 그렇게 상대를 한 거죠. 그런데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학생들이 납득을 할까요? 학생들이 시험을 볼 때 교수님들한테 전닝을 하거나 뭘 숨겨서 내거나, 내기로 한 거를 안 냈는데 냈다고 보고를 하거나 그러면 굉장히 큰 처벌을 받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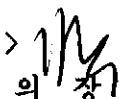
않습니까? 학교니까 더 높은 도덕 수준이 있어야 되고 더 큰 것을 유지시켜야 한다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직장으로서가 아니라. 임재수 평의원님께서 계속 직장동료니까 마음은 직장을 안 다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 제 친구가 학교한테 처벌받을 일이 생겨서 처벌 받는다면 그게 불의에 따른 처벌이라면 같이 투쟁하는 게 학생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친구가 정말 큰 잘못을 했는데 그것을 막아주는 것은 학생의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직원회도 마찬가지로 노조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은 학생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히려 꼭해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동표 평의원 참석)

아, 평의원 중에 직원 대표는 학교 편이구나 학교 것을 숨기려고 하는구나 라고 잘못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협의안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많은 대표자들이 실질적으로 외부감사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많은 학생들이 외부에 알려지는 거 두려워하고 어렵게 생각하고 학교에 피해주는 거 학생들이 더 체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 감사 필요하다는 대표자들이 많거든요. 그런 거 보면 심각한 문제임에 틀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박영무 : 오랜 시간을 논의했는데 평의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논의했다는 것이 두고두고 기록에 남을 일이 되는 겁니다. 잘 결단을 해주셔야 해요. 김용호 평의원은 의견이 어떻습니까?

평의원 김용호 : 평의원회 내에서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저는 일단 아까 이해진 동문이 만들어온 안에 대해서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계속 이재호 의원님이나 다들 의견을 경청만 해왔습니다. 목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맞지 않다 그 전에 평의원회에서 낸 안과 많이 맞지 않다는 의견에 의해서 이렇게 까지 된 것 같은데, 평의원 내에서 지금이라도 조율을 해나가는 게 나가서 내부감사를 하고 저는 대표자들과 얘기했을 때 내부 감사안이 잘 안되면 외부감사까지 가보자는 의견을 학생대표들과 나눈 바가 있습니다. 이번 내부 안이 잘 만들어져서 외부감사까지 안 가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구요, 다만 이게 안 된다면 외부감사까지 가서라도 꼭 해결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재호 평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는 두 분 다 이해가 갑니다. 이해진 동문께서 해왔지만 취지나 이런 게 맞지 않다는 게 다시 교수회에서 논의를 하겠다 그러면 저희도 학생회에서 또 논의를 해야 될 테고요, 다 대표기구마다 논의를 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는 평의원

< 간서명 란 > 

회 내에서 감사안을 제대로 낼 수 있을까 의구심까지 듭니다. 저는 오늘 회의 들어와서 말을 많이 아꼈고 지켜봤습니다. 지켜본 결과 좀 계속해서 어떤 탁상공론만 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 제 자신을 먼저 반성을 하고 평의원들께도 다시 한 번 요청을 드립니다. 저희가 제21차 대학평의원회 부터 평의원회에서 우리 학교의 잘못된 점을 고쳐내고 발전을 위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펀드문제 해결해보자고 결의를 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되다보니 상당히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평의원 오동석 : 결국은 목적을 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오는 이유는 불신일 것 같은데, 불신의 원인을 찾아가다보면 평의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 등에 대해서 학교 측에서 불성실하게 응했었고, 또 지금 협의회 참여하셨던 총장직무대행이나 총무처장, 기획처장이시면 적어도 보직을 맡으시기 이전에 일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학교 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일이라고 하면 이미 어느 정도는 충분히 이 사안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일 것 같은데, 파악하고 계시는 입장에서 이렇게 미리 한정을 자꾸 짓는 쪽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어찌됐든 간에 불신의 의혹을 계속 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전에 보여줬던 모습하고 이 사안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상식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뭔가 의심을 하게 되는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 같고, 과거에 자료를 협조하는 부분에 대해서 세 분 모두의 책임 있는 앞으로의 평의원회 활동과 관련해서 뭔가 약속이랄지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안이 현재로서는 지난 번에 서로 노력하자는 의견을 제가 불참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런 결정을 하셨다고 한다면 가능한 한 이거를 살려갔으면 한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요, 전제조건은 앞으로는 평의원회 활동 지원이랄지 정보 자료 제공을 성실히 응하겠다는 약속, 그리고 감사 대상이 되었던 것과 관련해서의 자료 협조에 대한 이게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 그걸 담보하기 위해서는 감사위원이 어떻게 구성되던지 간에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모두 다 응하는 것으로, 적어도 이 감사반에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것은 다수결에 의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철저히 한 사람 한사람이 자료 제출 요구권을 가지고 있고 모든 자료는 다 제공되어야 된다는 약속을 학교 측에서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전제 하에 다른 건 협의 결과에서 빼도 될 것 같고요, 감사의 목적은 진상조사에 있다 라는 것을 확인하고, 대상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했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 구

< 간서명 란 > 

성원 3:3 원래 평의회 안대로 내지는 여기 나와 있는 2:2:2, 네 번째는 감사 시기는 동의하는데 감사기간은 2주 이상 2개월 이내라던지 최소한의 기간을 길게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감사결과와 보고는 7일 이내와 직무대행과 평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견을 좀 모아보고 그 이후에 외부 논의는 할 수 있으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오늘 전반적인 평의회 논의 결과가 평의원들간에 의견이 너무 달라서 그런 것들을 좀 수렴하고 앞으로 평의회 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이 선에서 진행을 했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앞에 말씀 드렸던 3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자료 제출에 대한 약속이라든지 이런 권리를 확보하고 보장해줄 때 일단은 이것이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원래 평의회에서 제안했던 안은 받지 않고 개별적으로나 동문대표를 통해서 제시된 안에 대해서는 결국 받아들였다는 것은 결국은 평의회 활동을 인정하지 않는 것 밖에 되지 않는 것이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뭔가 명확한 신뢰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수정안을 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의장 박영무 : 이해진 평의원도 그런 말씀 하셨는데 이 문제만 가지고 하염없이 논의를 할 수는 없어요. 이미 결정을 해놓고 한 달 두 달째 이런 식으로 하면 논의가 한도 끝도 없이 계속되니까, 2주 정도 시간을 가지고 대학본부하고 지금 나왔던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을 논의를 하고 만약에 그때까지도 결정이 안 되면 처리 방안을 의장이 위임을 받아야겠습니다. 그렇게 결정을 해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고서는 논의만 계속 됩니다.

평의원 김용호 :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2주 정도 시간을 주고 안 되면 의장님께서 모든 안을 다 만드시고 그 안을 가지고 어떠한 안인지는...


의장 박영무 : 의장 책임 하에 진행하겠다는 거죠.

평의원 임재수 : 개별 투표로 정하시죠? 이렇게 어렵고 난해한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께 위임한다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해진 평의원도, 저도 마찬가지고. 위임 형태로 가서는 문제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개인 투표해서 과반수로 정해지면 그에 따른다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평의원 임원형 : 표결하자는 말씀이시죠?

평의원 김용호 : 표결은 지금 다 성원이 안 되시니까...

평의원 임재수 : 의장님, 아까 오동석 평의원님 말씀대로 자료 범위라든지 이런 것

< 간서명 란 >

 의 장

을 서로 약속을 해서... 학교의 정확한 입장은 모르겠지만 학교 측은 그럴 것 같아요. 펀드투자 문제는 평의회에서 논의할 내용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도 평의회 기능을 여러 번 읽어 봐요. 지금 우리가 감사에 대해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인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를... 어떤 평의회 기능에도 감사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평의원 이재호 : 우리가 직접 감사를 하는 게 아니라 자문을 하는 거죠. 예산 결산 자문에서, 이게 어디서 시작됐냐 하면 결산 자문위원회를 하는 과정에서 작년에 펀드투자 수수료가 발견된 겁니다, 평의회에서.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질문이 들어갔고 학교는 그것에 대해서 거짓으로 답변했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파고 들어가고 파고 들어가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더니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그래서 자문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자문이 이루어지지 않은 결산안을 교과부에 그대로 제출했고, 결국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법적으로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인 평의회 자문 행위를 학교가 방해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결산 자문을 하라고 해놓고 결산 자문하고 관련해서 이 돈이 어째서 쓰였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라 라고 내역을 요구하는데 그 내용을 제출을 안 하면 그러면 자문행위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규칙을 그 부분만 보지 마시고 (임원형 평의원 이석) 뒤를 보시면 평의회는 사람을 부를 수 있고, 자료 제출 요구를 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기에 응해야 합니다. 그것이 평의회 규칙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부분이 무시되고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감사해 달라 얘기하다보니 평의회에서 감사 기능이 있는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일의 시종을 살펴보면 이것이 어째서 그렇게 시작되었는지를 보면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료를 안내놓고 자료 줄 수 없다 그러면서 자문을 어떻게 합니까 자료가 없는데. 거기서부터 출발한 거죠.

의장 박영무 : 학교니까 이려고 있지, 다른 데 같으면 난리 났습니다.

평의원 임재수 : 반대일 수 있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협의를 통해서 여기서 몇 가지 말씀하신 안들을 담은 그런 것을 만약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다음 회의 때...

평의원 오동석 : 감사의 범위에 학교에 한함이라고 할 필요는 없는 거겠죠. 명확하게 몇 가지만 합의를 하고 일단 감사에 들어가면 모든 자료를 받아볼 수 있는 정도

< 간서명 란 >



만 되면 1차적으로 내부 감사로서의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원형 평의원 참석)

의장 박영무 : 좀더 협의를 한다고 하면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할까요?

평의원 이재호 :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를 해주시면 예를 들어서 지금 결국 협의를 하게 되면 이 안에 감사를 좀 더 강력하게 만들 만한 요소를 좀 더 가미한 그런 안이 될 거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예를 들어서 이해진 평의원, 교수회, 학교 해서 하는 것은 어떨까요? 동의를 해주시면...

평의원 조중열 : 이해진 평의원께서 안한다고 하시고 가버리셨어요.

평의원 오동석 : 외부에 하는 것은 참여하지 않으시겠다는 거고 내부 감사에 대해서는 참여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평의원 이재호 : 지금 이견 하나의 안이고 몇 가지 벌써 지적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평의원 오동석 : 진실을 밝히자, 진상을 규명하자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도 공통의 목적 아닌가요?

평의원 이재호 : 그런 것에 있어서는 충분히 협의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다만 그걸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한 거고, 아마 이해진 의원께서는 빨리 진행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평의원 임재수 : 의견접근이 좀 됐으니까 이 안의 내용은 이해진 평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 우리 평의원들의 생각을 좀 적어서 다시 안을 만들어서 학교에 전달을 하고, 그러면 학교에서도 크게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의장 박영무 : 그 때 가서도 또 안 되면 어찌시겠습니까? 그 시간을 정해야겠죠? 길면 2주, 그 다음에 결정이 안 되면?

평의원 임재수 : 그럼 개별로 표결하자는 거죠.


의장 박영무 : 무슨 안을 표결하나요? 새로 성립된 안이 있어야 표결을 하지요. 외부감사로 가는 걸로 결정된 안 하나 밖에 없습니다. 새 안이 나와야 표결을 하죠?

평의원 이재호 : 지금은 그것까지 생각할 수는 없을 거 같고, 우선은 하여간 시간을 주시는 게 어떨습니까?

의장 박영무 : 안이 만들어져야...

평의원 임재수 : 의장님 우리 안을 한 번 더 만들어보죠.

의장 박영무 : 그 시간을 무한정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의장으로서의 결의한 안이

< 간서명 란 >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실천으로 옮겨야할 총 책임이 저한테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본 것입니다. 무한정 논의만 하면 안 됩니다. 결의한 것은 실천을 해야죠. 한 2주 정도 가지고 새로운 안을 만들어 봅시다. 그래도 안 만들어지면...

평의원 이재호 : 새로운 안을 만드는 것을 말하자면 누가 협의해서 만들지는?

평의원 임재수 : 아까 이재호 평의원님 생각 괜찮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제가 이해진 평의원하고 연락을 드리고 같이 해서 그렇게 해서 한번 안을 만들어보겠습니다.

평의원 임재수 : 학생회에서든 학생회장도 한번 참여하시고 동문도 참여하시고 해서 하시죠.

평의원 이재호 : 참여하시겠어요?

평의원 오동석 : 협의는 적은 숫자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평의원 김용호 : 의견 첨부할 게 있으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논의하시는 것은 두 분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평의원 조중열 : 좋습니다.

의장 박영무 : 2주 동안 새 안이 안 만들어지면 어렵다. 기간 내에 새로운 안을 만들도록 노력해 주세요. 그 후에 의장이 결단을 내리겠다. 폐회하겠습니다.

2010년 7월 16일

의 장	박 영 무	(서명)
부의장	주 동 표	(서명)
평의원	조 중 열	(서명)
평의원	이 재 호	(서명)
평의원	오 동 석	(서명)
평의원	박 철 균	(서명)
평의원	임 재 수	(서명)
평의원	김 용 호	(서명)
평의원	임 원 형	(서명)
평의원	이 해 진	(서명)
평의원	김 관 균	(서명)
평의원	박 윤 규	(서명)
평의원	박 상 호	(서명)
기 록	진 성 호	(서명)

< 간서명 란 >
의 장